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 추가산정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20%추가	2,767,680	2,500,080	1,782,840	1,644,720	1,412,400	-	

방문요양 급여비용1 (방문당)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급여비용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요양 급여비용1 (방문당)

등급	급여비용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15%	9%	6%
60분이상	24,580	20	491,600	73,740	44,240	29,490
90분이상	33,120	20	662,400	99,360	59,610	39,740
90분이상	33,120	31	1,026,720	154,000	92,400	61,600
120분이상	42,160	25	1,054,000	158,100	94,860	63,240
150분이상	49,160	25	1,229,000	184,350	110,610	73,740
180분이상	55,350	25	1,383,750	207,560	124,530	83,020
210분이상	61,670	25	1,541,750	231,260	138,750	92,500
240분이상	68,030	25	1,700,750	255,110	153,060	102,040

가족요양60분(20일) 가족요양90분(31일)

분류	20일	30일	31일
급여비용	491,600	993,600	1,026,720
본부금(15%)	73,740	149,040	154,000

방문목욕 (방문당)

분류	목욕차(차량)	목욕차(가정)	차량미이용
급여비용	86,480	77,970	48,690
본부금(15%)	12,970	11,690	7,300

방문요양 급여비용2 (방문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공휴일	일요일	월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50%+	30%+	월한도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남는비용	15%	9%	6%
1등급	120분이상	42,160	63,240	54,800	2,306,400	54	2,276,640	29,760	341,490	204,890	136,590
	150분이상	49,160	73,740	63,900	2,306,400	46	2,261,360	45,040	339,200	203,520	135,680
	180분이상	55,350	83,020	71,950	2,306,400	41	2,269,350	37,050	340,400	204,240	136,160
	210분이상	61,670	92,500	80,170	2,306,400	37	2,281,790	24,610	342,260	205,360	136,900
	240분이상	68,030	102,040	88,430	2,306,400	33	2,244,990	61,410	336,740	202,040	134,690
2등급	120분이상	42,160	63,240	54,800	2,083,400	49	2,065,840	17,560	309,870	185,920	123,950
	150분이상	49,160	73,740	63,900	2,083,400	42	2,064,720	18,680	309,700	185,820	123,880
	180분이상	55,350	83,020	71,950	2,083,400	37	2,047,950	35,450	307,190	184,310	122,870
	210분이상	61,670	92,500	80,170	2,083,400	33	2,035,110	48,290	305,260	183,150	122,100
	240분이상	68,030	102,040	88,430	2,083,400	24	1,632,720	450,680	244,900	146,940	97,960
3등급	120분이상	42,160	63,240	54,800	1,485,700	35	1,475,600	10,100	221,340	132,800	88,530
	150분이상	49,160	73,740	63,900	1,485,700	30	1,474,800	10,900	221,220	132,730	88,480
	180분이상	55,350	83,020	71,950	1,485,700	26	1,439,100	46,600	215,860	129,510	86,340
	210분이상	61,670	92,500	80,170	1,485,700	24	1,480,080	5,620	222,010	133,200	88,800
	240분이상	68,030	102,040	88,430	1,485,700	21	1,428,630	57,070	214,290	128,570	85,710
4등급	120분이상	42,160	63,240	54,800	1,370,600	32	1,349,120	21,480	202,360	121,420	80,940
	150분이상	49,160	73,740	63,900	1,370,600	27	1,327,320	43,280	199,090	119,450	79,630
	180분이상	55,350	83,020	71,950	1,370,600	24	1,328,400	42,200	199,260	119,550	79,700
	210분이상	61,670	92,500	80,170	1,370,600	22	1,356,740	13,860	203,510	122,100	81,400
	240분이상	68,030	102,040	88,430	1,370,600	20	1,360,600	10,000	204,090	122,450	81,630
5등급	90분이상	33,120	49,680	43,050	1,068,500	35	1,159,200	-90,700	173,880	104,320	69,550
	120분이상	42,160	63,240	54,800	1,177,000	27	1,138,320	38,680	170,740	102,440	68,290
	150분이상	49,160	73,740	63,900	1,177,000	23	1,130,680	46,320	169,600	101,760	67,840
	180분이상	55,350	83,020	71,950	1,177,000	21	1,162,350	14,650	174,350	104,610	69,740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06시 :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X)
- 일요일 : 30% 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 50% 가산



시니어 뉴 라이프 솔루션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제시 절차)

-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 ②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 ②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 ①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 ②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7.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3회 이상 발생되면 해당 급여에 대한 10%의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8.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료된다.
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료안내서 및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선원인수인으로서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휴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⑤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 ① 기관 정보의 안내 : 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건물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역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장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기관의 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접수 : 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⑥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하여야 한다.

⑧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설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급여비용영수증 정보제공 : 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⑪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5 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2025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증가액	236,500 원	213,800 원	29,900 원	28,800 원	25,400 원	13,700 원

[장기요양 수가 안내]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기준입니다.)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3시간미만	1등급	31,850 원	4,778 원	32,520 원	4,878 원
	2등급	29,480 원	4,422 원	30,100 원	4,515 원
	3등급	27,220 원	4,083 원	27,790 원	4,169 원
	4등급	25,980 원	3,897 원	26,530 원	3,980 원
	5등급	24,740 원	3,711 원	25,260 원	3,789 원
	인지지원등급	24,740 원	3,711 원	25,260 원	3,789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9,810 원	5,972 원	40,650 원	6,098 원
	2등급	36,850 원	5,528 원	37,630 원	5,645 원
	3등급	34,020 원	5,103 원	34,740 원	5,211 원
	4등급	32,470 원	4,871 원	33,160 원	4,974 원
	5등급	30,920 원	4,638 원	31,580 원	4,737 원
	인지지원등급	30,920 원	4,638 원	31,580 원	4,737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3,360 원	8,004 원	54,490 원	8,174 원
	2등급	49,420 원	7,413 원	50,470 원	7,571 원
	3등급	45,620 원	6,843 원	46,590 원	6,989 원
	4등급	44,070 원	6,611 원	45,000 원	6,750 원
	5등급	42,500 원	6,375 원	43,400 원	6,510 원
	인지지원등급	42,500 원	6,375 원	43,400 원	6,51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6,360 원	9,954 원	67,770 원	10,166 원
	2등급	61,480 원	9,222 원	62,780 원	9,417 원
	3등급	56,760 원	8,514 원	57,960 원	8,694 원
	4등급	55,210 원	8,282 원	56,380 원	8,457 원
	5등급	53,640 원	8,046 원	54,780 원	8,217 원
	인지지원등급	53,640 원	8,046 원	54,780 원	8,217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3,110 원	10,967 원	74,660 원	11,199 원
	2등급	67,720 원	10,158 원	69,160 원	10,374 원
	3등급	62,570 원	9,386 원	63,900 원	9,585 원
	4등급	61,000 원	9,150 원	62,290 원	9,344 원
	5등급	59,450 원	8,918 원	60,710 원	9,107 원
	인지지원등급	53,640 원	8,046 원	54,780 원	8,217 원
13시간초과	1등급	78,400 원	11,760 원	80,060 원	12,009 원
	2등급	72,630 원	10,895 원	74,170 원	11,126 원
	3등급	67,100 원	10,065 원	68,520 원	10,278 원
	4등급	65,540 원	9,831 원	66,930 원	10,040 원
	5등급	63,990 원	9,599 원	65,350 원	9,803 원
	인지지원등급	53,640 원	8,046 원	54,780 원	8,217 원